

## 【 2 】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발의일자 : 1999. 7. 21

발 의 자 : 김완수의원의외 2인

### □ 주 문

○ 제2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미통상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주행세 도입의 필요성과 절차이행에 대한 당정협약 및 관계부처 협의 내용이 수차례 걸쳐 언론에 공포되고 마침내 지난 6. 11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음에도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지방주행세 신설을 조세간소화 측면에서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재조정방안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라며 지방주행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 □ 제안이유

○ 98년도 양주군에서 징수한 지방세 총액 375억원중 도세가 146억원(39%)이고 군세는 229억원(61%)이며 이중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주행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한미통상협약의 이행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이 최저 9%에서 최고 40%까지 인하되어 양주군의 군세중 23%(53억원)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99. 6. 1일 등록대수(승용차15,900대)를 기준하여 세율인하에 따른 10억원의 세수결함 요인이 있으나 5억원만 교부된 바 있고

○ 또한 양주군의 경우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류소비가 늘고 있으나 세수결함 현상은 심화되어 주행세 신설을 백지화 하고 증액 교부금으로 세수감소분을 보전시키려 한다면 자구노력 없이 얻어지는 의존 수입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군 재정의 예측성과 안전성 확보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다

○ 특히 본 사안은 98년도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방주행세 도입을 적극 검토토록 지시되어 국가정책과제로 결정된 대국민 약속사항으로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므로 지방주행세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임.

##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주행세 신설촉구 건의문

○ 제2기 민선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의 재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상응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주행세 신설에 관하여 우리 양주군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지방주행세 신설은 대통령 지시에 의거 국가정책 과제로 결정된 대국민 약속사항으로서 법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일부 부처의 반대로 본건이 무산된다면 이는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증액 교부금으로 보전시키려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없이 얻어지는 의존수입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지방의 재정자주권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민선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합니다.

3.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등 유류소비로 수반되는 제반문제점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는 많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행세를 지방세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 또는 지방세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는 지방세원을 국세화 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반드시 지방주행세가 신설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9. 7.

양 주 군 의 회 의 원 일 동